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1. 23 선고 2020가단814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순천시

소송대리인 A, B, C

피 고 1. D

2. E

변 론 종 결 2021. 10. 5.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1.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 D와 F 사이에 체결된 2017. 7. 11.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은 F에게 순천시 교통과 2017. 7. 11. 접수 G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D와 F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7. 7. 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19,2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E와 F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7. 7. 26.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E은 원고에게 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9. 1. 기준으로 F에게 30,646,580원의 지방소득세(2011년 ~ 2015년 귀속 분) 및 그에 대한 가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F는 2017. 7.경 채무초과상태(적극재산 약 6억 원, 소극재산 약 8억 원)였다. 다. 피고 D은 F의 배우자이다. 피고 D은 2017. 7. 11. F와 사이에 F 소유의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함)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제1증여계약'이라고 함, 원고는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자동차 매매금액이 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률적으로 증여계약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취지도 그와 같이 선행함)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 D은 2017. 7. 27. F와 사이에 F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제2증여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 후 2017. 8.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은 2017. 8. 22. H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172,827,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 중 각 1/9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19,203,000원(= 172,827,000원 × 1/9)이다.

바. 망 I(2016. 9. 17. 사망)은 1985. 10. 18.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E와 F는 망 I의 공동상속인(공동상속인은 총 9명이고, 상속지분은 모두 동일함)인데, 피고 E는 2017. 7. 26. F 등 모든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I 소유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내용: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을 갖지 않고 피고 E의 단독 소유로 함, 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 후 2017. 8. 2. 피고 E의 단독 소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E는 2017. 7. 26.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17. 8.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8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3,333,333원(= 60,000,000원 × 1/1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순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결과, H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1증여계약, 제2증여계약,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제2증여계약 이후 H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취득한 사실과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이후 J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제2증여계약 및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가액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증여계약, 제2증여계약,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모두 취소되고, 피고 D은, F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순천시 교통과 2017. 7. 11. 접수 G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9,2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E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F가 피고 E의 인감과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동시에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했다. F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인 22,984,715원을 받았을 뿐이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매매대금을 주고 증여를 받았다. F가 이 사건 차동차를 운행할 능력이 없어서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 을나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 E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J에게 매도한 돈 중 일부(22,984,715원)를 받았고, 11,900,720원은 F가 신용불량자라서 F의 처인 피고 D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F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하여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

자동차의 표시

자동차등록번호 :

제원관리번호 : 008-2-00026-0013-1310

차 명 : E300

차대번호 :

원동기의 형식 : 272 980

제작년월일 : 2011. 09. 29.

사용본거지(차고지) : 전라남도 순천시

등록연월일 : 2011. 10. 19.

부동산의 표시

- | | | | |
|-------------|---|---|------|
| 1. 전라남도 순천시 |  | 대 | 168㎡ |
| 2. 전라남도 순천시 | | 대 | 145㎡ |
| 3. 전라남도 순천시 | | 대 | 20㎡ |
| 4. 전라남도 순천시 | | 대 | 106㎡ |

5.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순천시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전유부분은 건물의 표시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1층 66.99㎡

2층 66.99㎡

- 이 상 -

